

M&A 신고규정 위반 철저감시!

공정위, 2000-02년 과태료 7억5000만원 ... 관련규정 인식 미흡

합병 등 기업결합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기 위해 각종 공시점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관련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시자료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위반사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또 상장·등록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신고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사업자들에게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주지시키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처리 건수는 2000년 703건에서 2001년 644건, 2002년 602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0년 40건에서 2001년에는 43건, 2002년 44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총 1949건의 기업결합 중 6.5% 선인 127건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모두 7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 공시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홈페이지 안내를 비롯해 <기업결합 질의응답집>, <M&A Guide> 등 설명책자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단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관련 규정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신고규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총 기업결합건수	703	644	602
위반건수	40건	43건	44건
총 과태료 부과금액	2억3600만원	1억8400만원	3억3000만원
평균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	5900만원	4300만원	7500만원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는 1999년 2월 도입됐으며, 위반횟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부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포함 또는 제외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연계해 해당 기업들의 신고 누락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제한성이 적은 소규모 기업결합, 계열사 간 임원겸임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1>